

연구자권리선언과 연구자복지법

보편적 권리와 선별적 지원 사이에서

김민환(한신대학교)

1.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범주로서의 연구자

- 지식인, 학자가 아닌 연구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연구자인가?
- 연구자권리선언에서 정의된 연구자의 정의

“연구자는 연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체계적 지식을 연마하고 전수하며, 합리적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일체의 행위를 연구 노동이라 한다. 호기심을 품은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연구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연구자는 인류 공공의 지적 체계를 갱신함으로써 공동체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범주로서의 연구자

- ‘학문·사상의 자유’에서 ‘연구(탐구)의 자유’로: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연구자?
- 가장 넓은 뜻으로 제안된 연구자 범주에 대한 고민과 반론: 연구자의 전문성과 연구 성과에 대한 고려(“체계적 지식/합리적 방법”이라는 문구)
- 범주의 나열은 혹시 가능한가?: 정규직 교수와 연구원 / 비정규직 교수/연구자, 초중고교 교사, 학습지 교사, 대학원생, 독립연구자, 정당이나 사회단체에서 대안적 정책을 개발하는 활동가 등

cf. 독립연구자란?: 4대보험으로부터 독립된 연구자?

1.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범주로서의 연구자

- 내부에서 보는 연구자 vs 외부에서 보는 연구자

정규직 교수와 연구원

비정규직 교수와 연구원
대학원생, 독립연구자

초중고교 교사, 학습지 교사
정당이나 사회단체에서 대안적 정책을 개발하는 활동가

-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보편적 권리의 문제 => 연구자권리선언

2. 연구자권리선언의 의의

- 선언의 역사적, 현실적 맥락 부각: 연구의 공공성 위기와 연구자의 생존 위기
- ‘당사자 운동’ 혹은 ‘당사자 선언’이라는 것: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발언하는 것. 이 때문에 대등한 위치에서 연구자운동은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당사자운동의 위험은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기주의적 성격을 가지기 쉽다는 점.

1,700여명의 서명.

cf. 제8조 사회경제적 권리

“연구자는 모든 노동자, 시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구노동을 통하여 노동자로서의 생존, 시민으로서의 품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2. 연구자권리선언의 의의

- 연구자 내부의 여러 차이에 대한 성찰과 이것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공표
 - 연구의 공공성 위기와 연구자의 생존 위기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한 것.(가령, 연구진흥 정책이 성공해 연구를 진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연구자의 생존 위기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음).
- cf. 연구의 공공성 위기에 대한 대책은 6조 ‘정책 참여’와 7조 ‘조직 결성’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은 연구자의 생존 위기와 관련되어 있음.
- 사회를 향한 선언 + 연구자 내부를 향한 선언(‘제3조 연구자 7의 책무’ 조항).

3. 연구자복지법이 놓인 자리

- 연구자의 생존 위기에 대한 해법
- 연구자복지법의 적용 대상: 다양한 연구자 범주 중 이 법의 혜택을 받을 범주를 명확하게 해야할 지도.
사회적 인식 및 지지의 문제 + 실질적 지원과 효과의 문제 때문.
- 비정규직 교수와 연구원, 대학원생, 독립연구자 등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이 범주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 연구자 범주의 축소
'보편적 권리로서의 연구의 권리' -> '연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연구자권리선언) -> '생존 위기를 겪는 연구자'(연구자복지법)

3. 연구자복지법이 놓인 자리

연구자복지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노동자성을 인정 받기 힘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 연구자 생애주기별 지원 - 결혼, 육아, 학위논문 작성, 다양한 연구활동 지원, 노후 등
- 대출,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금융 지원, 연구자를 위한 사회적 주택 및 연구공간과 연구를 위한 기반 시설 제공 등
- (연구 이력 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연구지원? 강의 등 교육과의 연계는?)

3. 연구자복지법이 놓인 자리

연구자복지법과 ‘연구자공제회법’

- ‘연구자 공제회’를 통한 우회는 가능할까?
- 정부 지원 + 연구자상생기금(대학 및 정규직 연구자의 연대 기금) + 개별 연구자 기금
- 교직원공제회 + 사학 연금 등의 확대는 가능할까?
- 예술가 + 공익적 사회활동가 + 연구자를 모두 포함하는 공제회의 가능성

=> 어떤 경우든 ‘공제회법’의 제정이 필요함.